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

기획위원회 회의통과 : 2024. 1. 11.

교무위원회 회의통과 : 2024.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제44조제6항에 따라 졸업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졸업인증제”란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정해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공통지정요건과 학과(전공)지정요건 및 학생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 지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대학공통지정요건은 우리 대학의 학부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학과(전공)지정요건은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졸업요건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소속학과(전공)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재입학, 전과 및 전공배정 등의 사유로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 학과(전공) 학년의 학과(전공)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유학생 언어요건은 우리 대학의 학부 재적생 중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졸업인증제 적용대상 중 별표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증요건) ① 제2조에 따른 대학공통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

2.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19학번 입학생). 다만,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교 현장교사윤리 교과목(19학번 이후 입학생)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학과(전공)지정요건은 학과(전공)별로 내규로 정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언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하 “대체 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면 외국인 유학생 언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대체 과정과 수료 조건은 언어교육원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시기 및 절차)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졸업인증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근거로 학과(전공)에서는 졸업인증제 인증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지도) 졸업인증제를 운영하고 지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인증제 관련한 학생지도 : 학과(전공)

2. 사회봉사와 관련한 사항 : 사랑나눔봉사단

3.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관련한 사항 : 인성교육원

4. 학과(전공)지정 인증요건과 관련한 사항 : 학과(전공)

5. 외국인 유학생 언어요건과 관련한 사항 : 국제교류팀

6. 졸업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총괄관리 및 졸업사정 : 수업학적팀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직제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6월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내규는 2014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졸업인증제에 관한 규정」은 이 전면개정 내규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 중 경영학과, 실무영어전공, 법학과, 행정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 졸업사정 시까지 졸업인증제 중 사회봉사를 면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사항 중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 이수 20학번부터 전공 필수로 이수함에 따라 19학번은 졸업인증제로 적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이수를 19학번 이후부터 졸업인증제로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 중 제4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졸업인증제 충족 기준(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관련)

1. 대학공통지정요건-사회봉사영역

구 분	입학구분	신(편)입학 학년도	사회봉사 (사랑나눔봉사단 주관 봉사)
내국인	신입학	2009학년도 이전	면제
		2010~2012학년도	32시간(0시간)
		2013학년도 이후	32시간(12시간)
	편입학 (3학년)	2011학년도 이전	면제
		2012~2014학년도	16시간(0시간)
		2015~2021학년도	16시간(6시간)
2022학년도 이후		면제	
외국인	신입학	2016학년도 이전	면제
		2017~2019학년도	16시간(6시간)
		2020학년도 이후	12시간(0시간)
	편입학 (2학년)	2020학년도 이전	8시간(3시간)
		2021학년도 이후	6시간(0시간)
	편입학 (3학년)	2018학년도 이전	면제
		2019~2021학년도	8시간(3시간)
		2022학년도 이후	면제
		면제	면제
해외복수학위생	신입학	2016학년도 이전	면제
		2017학년도 이후	16시간(6시간)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입학	2022학년도 이후	12시간(0시간)
면제자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 ②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인정한 장애학생인 경우 ④ 2014학년도 이전에 모집중지된 학과(전공) 소속 학생인 경우 ⑤ 2018학년도 전기에 대구외국어대학교에서 우리 대학 4학년 7학차 이상으로 특별편입한 자 ⑥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외국인 학생 중 4학년 7학차로 편입한 경우 ⑦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성인학습자(만 30세 이상)인 경우(단,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성인학습자는 상기 제시된 요건 충족 필수)		

※ '성인학습자'는 우리 대학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으로 정의함.

2. 대학공통지정요건-교과이수영역

구 분	입학구분	이수 대상 교과목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사범대 제외)	학교현장과교사윤리 (사범대만 해당)
내·외국인	신입학	2019학년도 입학생 이수 필수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수 필수
	편입학	2021학년도 입학생 이수 필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수 필수
면제자	① 의과대학, 간호대학,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②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인정한 장애학생인 경우 ④ 해외복수학위로 선발된 학생인 경우 ⑤ 성인학습자(만 30세 이상)인 경우 ⑥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외국인 학생 중 4학년 7학차로 편입한 경우		

※ '성인학습자'는 우리 대학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으로 정의함.

※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인증제 세부요건이 아닌 전공필수로 지정하며, 그 이수기준은 별도로 정함.

3. 학과(전공)지정요건

구 분	입학구분	학과(전공)지정요건
내국인	신입학	소속학과 및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여부 상이
	편입학	면제
유스티노자유대학	신·편입학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수 필수
면제자	①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인정한 장애학생인 경우 ③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 ④ 해외복수학위로 선발된 학생인 경우 ⑤ 성인학습자(만 30세 이상)인 경우 (단,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성인학습자는 상기 제시된 요건 충족 필수) ⑥ 2018학년도 전기에 대구외국어대학교에서 우리 대학 4학년 7학차 이상으로 특별편입한 자 ⑦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외국인 학생 중 4학년 7학차로 편입한 경우	

※ '성인학습자'는 우리 대학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으로 정의함.

4. 외국인 유학생 언어요건

구 분	입학구분	신(편)입학 학년도	언어요건
외국인	신입학	2022학년도 이후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편입학	2024학년도 이후	
면제자	①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 소속 또는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인정한 장애학생인 경우 ③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외국인 학생 중 4학년 7학차로 편입한 경우		